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uestion 부분디자인을 출원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 구법에는 물품 전체의 외관에 관한 디자인에 대해서만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지만 개정법(2001.7.1)에서는 디자인의 정의 규정에 물품의 부분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도 디자인임을 명확히 하여 물품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도 출원하여 등록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
- 따라서 부분디자인으로 등록 받은 디자인을 타인이 전체디자인의 일부로 도용하는 경우에도 침해를 구성하게 됩니다.
- 부분디자인의 예로는 커피 잔의 손잡이, 병의 주둥이, 오토바이의 본체 등이 있습니다.
- 부분디자인 출원방법
 - 출원서 : 부분디자인출원임을 표시. 출원서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 위에 【부분디자인 여부】란을 만들어 다음의 예와 같이 기재하며, 부분디자인의 출원이 아닌 경우에는 【부분디자인 여부】란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 * 예: 【부분디자인 여부】부분디자인
 - 도면 :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실선으로, 그 외 부분은 점선으로 표시합니다.
 -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는 물품명을 기재합니다.
 - * 예: 커피 잔의 손잡이(X), 커피 잔(O)
 - 디자인의 설명 : 물품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을 디자인등록출원 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을 도면·사진 또는 견본에서 특정하고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기재합니다.
 - 동일인 간에도 확대된 선원주의가 적용되므로, 커피 잔의 전체디자인과 커피 잔의 손잡이에 관한 부분디자인을 모두 등록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커피 잔의 손잡이에 관한 부분디자인을 먼저 출원하고 이를 포함한 전체디자인을 후출원하거나, 커피 잔의 손잡이에 관한 부분디자인과 전체디자인을 동일자로하여 출원하여야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글자체디자인은 무엇입니까?

Answer

- 디자인보호법상 “글자체(typefaces)”라 함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을 말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의2호)
- 종전의 의장법에서는 독립하여 거래가 가능한 구체적인 유체동산을 물품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물품의 형태를 ‘의장’으로 정의하였기 때문에, 물품성을 결여한 글자체디자인이 의장법상의 의장으로 보호받을 수 없었습니다.
- 2005년 개정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디자인의 정의규정 자체를 개정하여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물품의 부분(제12조를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이하 같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글자체 자체를 물품으로 의제(擬制)함으로써 글자체디자인을 보통의 디자인과 동일하게 디자인보호법에서 보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

출처 특허청 홈페이지

